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5. 1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12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주민감사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개정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개정 (안 제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개정 및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